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2. 8. 9 선고 2022가단29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2. 7. 19.

판 결 선 고 2022. 8. 9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3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 
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울진지원 등기소 2020. 9. 18. 접수 제92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D는 2005. 3. 3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는 2020. 9. 18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8. 31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D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)의 철거와 원고 소유인 경북 영덕군 E 대 950㎡, F 대 218㎡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(2020가단3943)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8. 12. 원고 승소판결(이하 ‘이 사건 판결’)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주장 및 판단

#### 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D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22. 8. 31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.

#### 나. 판단

##### 1) 관련 법리

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전채권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(대법원 1961. 8. 10. 선고 4293민상436 판결 등 참조),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(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).

## 2) 구체적 판단

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경북 영덕군 E 대 950㎡ 및 F 대 218㎡의 인도 청구권인바,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물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강호

별지